

##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12년 10월 12일 조례 제1244호  
일부개정 2017년 12월 26일 조례 제1639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시민감시단”이란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등을 감시·예방·제보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**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임무)** 시민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감시·예방·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 오염·불법행위 및 불편사항
2. 도로, 하천, 공원내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
3. 불법광고물
4. 재해위험시설물
5. 그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

**제5조(구성)**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(시의 주민을 말한다, 이조례에서 같다)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한다.

② 시민감시단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별로 구성할 수 있다.

**제6조(임기)** 시민감시단원(이하 “감시단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촉 해제)** 시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시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6>

1. 소재 불명 또는 오산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

##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

2.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3.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
4.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
5.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

**제8조(운영)** ① 시민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별로 운영한다.

②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9조(증명)** ① 감시단원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시단원증을 소지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위촉된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단원증을 발급하고, 위촉 해제된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감시단원증의 발급 및 회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단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활동 지원 등)** ① 시장은 감시단원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시 부서별로 전문교육 또는 연찬회, 선진시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6>

② 시장은 시민감시단의 임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감시단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우수 감시단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.

**제11조(금지행위)** 감시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
2. 불법행위 감시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
3. 그밖에 감시단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
**제12조(보고)** 시민감시단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, 시장은 시민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

**부칙** <2017. 12. 26 조례 제16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7. 12. 26>

**오산시 ○○시민감시단원증**

- 전 면(규격 : 가로 6cm × 세로 9cm)

<p><b>오산시 ○○시민감시단원</b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80%;">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진 3cm×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)</p>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성 명</b> <b>오 산 시</b></p>
--

- 후 면

<p>(증번호 : 오산 제 년도-일련번호)</p> <p><b>성 명 :</b></p> <p><b>생년월일 :</b></p> <p><b>위촉기간 :</b></p> <p>위 사람은 오산시 ○○시민감시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본 증 소지자는 (※ 수행업무 범위 명시)하며 단속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</li><li>2.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 니다.</li><li>3. 해촉되거나 위촉기간 만료시 이 증을 발급기 관에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</li>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오산시장 (직인) (관련부서 연락처 기재)</p>
---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7. 12. 26>

### ○○ 시민감시단원증 발급대장

증번호	발급 년월일	증명사진	성명	생년월일	위촉기간	회수여부	발급사유	결재	
								담당	과장